

kiri Weekly

2016.3.14. 제375호

주간 포커스

연금해지 시 세금 부과, 과도한가?

이슈 분석

종신보험가입자 특성을 활용한 마케팅전략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보험산업의 미래

글로벌 이슈

영국 보험업계, 브렉시트(Brexit) 우려 표명
세계 각국의 요구자본제도 현황 및 특징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주간 포커스와 이슈 분석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연금해지 시 세금 부과, 과도한가?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세금부과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주장 내용의 핵심은 부과되는 세금이 납입 시 받는 혜택보다 크며, 연금수령 시 일정수준 이상의 연금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과도하다는 것임.
 - 연금납입 시 세제혜택은 과세시점을 수령 시로 이연시킨 것이므로, 중도해지로 축적된 자산을 수령할 경우 미루어진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함.
 - 일정수준 이상의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종합과세 하는 것 역시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 시 세금부과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금융회사가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제혜택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오해에서 비롯됨.
 -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자산 축적에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해지하거나 만기 시 적립금을 목돈으로 인출할 경우 징벌적 과세가 부과됨.
 - 하지만 정책전달과정에서 이러한 목적보다는 세제혜택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음.
-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은 국민에게 연금세제 전반의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힘써야 함.
 -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노후보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사적연금은 질적·양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1. 검토 배경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원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¹⁾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에 따라 연금저축은 소득이 4,000만 원을 넘는 중산층 이상 근로자의 연금가입률이 52%에 이를 정도로²⁾ 국민의 대표적인 노후보장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연금저축의 성장에는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가입을 통한 절세(節稅)효과 홍보 역시 국민이 연금저축의 세제효과를 인지하고 가입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절세를 통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연금자산 축적이다. 그럼에도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연금세제 전반에 관한 내용보다는 절세 측면이 강조된 나머지 연금세제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금저축의 역할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금세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금세제에 대한 오해와 세제 개요

연금세제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첫째, 중도 혹은 만기에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반적인 예금상품과 달리 운용수익뿐만 아니라 원금 역시 과세가 되어 납세자의 세(稅)부담이 크다는 점과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이 납입 시 받는 세제혜택보다 크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되어 세(稅)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금세제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러한 오해는 풀릴 수 있다.

우리나라 연금세제는 납입 시 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해 비과세(Exempt), 운용 시 운용이익에 대해 비과세(Exempt), 그리고 연금수령 시 원금과 연금자산 운용이익 모두에 대해 과세(Taxation)하는 이른바 “EET”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금에 대한 과세방식이다.

납입 시 비과세란 과세대상인 개인의 전체 소득 중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연금저축 납입금액은 한 해 최대 400만 원까지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과세대상 제외 방식은 2014년부터 납입금액의 일정부분(12%)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다.³⁾ 운용 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역시 비과세한다. 여기서 비과세의 정확한 의미는 면세(免稅)의 의미가 아니라 납입

1)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음.

2) 국세청(2016), 『2015 국세통계연보』.

3)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함.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은 과세를 연금수령시점으로 미룬 것을 의미하며, 연금수령시점에는 원금과 운용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하므로 소득에 대한 과세의 누락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적립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그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적립금을 중도 혹은 만기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친 전체 금액에 대해 세율 1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2013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2%의 해지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만기 이후 적립금을 일정기간 이상 연금(annuity)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세율 3~5%의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하며 이를 수령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과세이연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및 적립식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본인이 납입한 과세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적연금액은 공적연금 수령액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한다.

3. 연금세제의 타당성 논거

앞서 설명한 연금세제의 EET 과세원칙에 따라 중도해지 혹은 일시금 수령 시의 과세는 미루어졌던 과세가 실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금에 대한 과세는 과세논리상 타당하다.

또 다른 지적은 과세이연 시 받은 혜택은 세액공제율 12%인데, 중도 혹은 만기에 일시금으로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15%의 기타소득세를

적용하여 납입 시 혜택보다 수령 시 과세가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해당되는 연 5,500만 원 이하 소득자⁴⁾의 경우 적용받는 세액공제율은 기타소득세율과 동일한 15%이다. 또한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이주, 가족의 질병, 개인 파산 혹은 워크아웃 등 급전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저율분리과세하고 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상 계층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2%로 중도해지 혹은 일시금 수령 시 과세되는 15%의 세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차이는 연금저축 해지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사적연금인 퇴직연금(퇴직급여) 중도수령에 관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사적연금 적립액의 중도 및 일시금 수령에 관한 가입자의 성향을 알 수 있다. 동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가 노후준비장치로 퇴직급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중도사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2%에 이르며, 중도수령으로 사용한 퇴직급여의 용도는 여가활동, 자동차 구입 등 불요불급(不要不急)하지 않은 용도의 소비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립금을 중도수령한 사람의 45.7%가 퇴직급여 중도사용을 후회한다고 응답하였다.⁵⁾

이를 요약하면,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을 적립해 두어야 할 필요는 느끼지만, 중도수령 시 세제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퇴직급여의 경우 은퇴

4)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자의 비율은 92%임.

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 7. 17).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 후에는 이를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연금저축 해지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연금가입 시에는 세제혜택을 베풀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보다 큰 과세를 함으로써 연금저축 해지유인을 줄이고자 하는 연금세제는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인 401(k)의 경우 49세 이하 가입자는 연간 \$18,000까지, 50세 이상은 \$24,000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연금수령 연령인 60세 이전 해지 시 원금과 운용수익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여타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며 이에 더하여 10%의 징벌적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역시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나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원금과 이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5년 이후 해지 시에는 일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납입 시 수령한 세제혜택과 동일하거나 혹은 이보다 3% 포인트 높은 수준의 해지 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다.

중도해지 시 중과세에 관한 지적 이외에도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적용으로 인한 중과세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 사적연금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려로 보인다.

사적연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에 대해 여타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는 것은 ‘동일한 규모의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성을 가진다. 물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의 특별한 기능을 고려하여 적은 수준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가 과연 분리과세 해야 할 ‘적은’ 수준의 연금수령액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기준인 연소득 1,200만 원에는 사적연금의 한 축을 담당하는 퇴직연금으로부터의 연금소득이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⁶⁾되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순수하게 개인이 임의로 쌓은 적립금으로부터의 연금소득만을 포함하므로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은퇴 이후 연간 1,200만 원을 20년간 수령하려면 단순계산으로도 연금적립 시 1년에 1,200만 원씩 20년간 납입해야 가능한 액수인데, 현재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가 IRP 추가적립금을 포함해서 연간 700만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종합과세 걱정은 과도한 우려라 하겠다.

하지만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이 2,000만 원이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 역시 2,0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 역시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6) 소득 종류가 달라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

4. 연금세제에 대한 오해의 원인

현재 연금세제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연금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금세제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시행된 2014년에 이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1.1%에 불과할 정도로 일반 국민의 연금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낮은 수준이다.⁷⁾ 또한 연금세제에 관한 정보를 주로 접하게 되는 금융기관에서 역시 연금저축 납입 시 세제혜택은 크게 강조하는 데 반해 중도해지 혹은 일시금 수령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혜택에 비해 강조를 덜 하는 것 역시 가입자가 연금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5. 요약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세제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와는 달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국민에게는 납입 시와 운용 시 과세를 이연시킨 후 수령 시에

저율로 과세하는 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적립한 자금을 연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개인에게는 약속할 때 주었던 혜택을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상당수가 연금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연금세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금세제를 설계하고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의 사적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세제혜택으로 인한 연금저축 가입유인에 관한 정보만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연금세제 전반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적연금세제에 대한 이해가 확대될 때 사적연금 이용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의 사적연금 시장이 앞으로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kiri**

7) 보험연구원(2014),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보고서 2014-9.